

# 圖書館法에 바라는 것

—出版界에서—

鄭 鎮 肅

우리나라에는 아직 圖書館法이 없다. 온갖 時代潮流를 채빨리 받아들이는데 敏感한 韓國에서 어찌하여 精神文化에의 荣養素를 供給하는 圖書館이 法의으로 體貌가 確立되지 못하고 있는지 理解하기 어렵다.

圖書館法은 過去 圖書館界的 執拗한 노력으로 數次 國會의 議案으로까지 提出되였던 것이다. 過去 政治人들의 無智와 無誠意로 成功하지 못한 것을 생각 할 때, 文化的인 後進의 脱皮가 좀처럼 이루될 것 같지 않은 서글픈 情況이다.

圖書館法의 有無는 文化國의 表面的인 必要性에서도 그려하거니와 實質的으로 文化界一般에 끼치는 영향이 자못 크다. 비유컨대, 山에 나무가 없으면 洪水가 나오고, 따라서 人命·財產과 農作物에被害을 주는 것과 같이,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없이는 出版이 向上되기 어렵고, 이에 따라 廣義의 社會教育에 支障이 있다면 國家將來는 暗澹해 질 수 밖에 없다.

圖書館法이 圖書館界的 保護育成을 위한 法이요, 圖書館의 發展을 통해 文化界의 隆盛을 꾀 할 수 있는데, 第一次의으로는 出版界를 鼓舞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法이 制定되고 施行되면 圖書館界는 勿論 出版界는 그야말로 松茂柏悅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마디로 圖書館法이라 해도 先

進國에서는 이를 다시 細分하여, 學校圖書館法 혹은 公共圖書館法 等으로 分類함은 물론, 社會教育法으로까지 擴大·適用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이러한 모든 法에서의 圖書館에 관한規定을 충분히 反映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學校圖書館法의 目적은 學校教育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基礎的인 設備임에 비추어, 그健全한 發達을 圖謀하기 위하여 圖書館을 設置해서 學校教育에充實을 期해야 한다는 것과 아울러 社會教育法의 立法趣旨가 學校의 教育課程으로 行해지는 教育活動을 빼고 青少年과 成人에게 폐포는 組織的 教育活動을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고, 그러한 목적을達成하기 위하여 圖書館을 社會教育을 위한 機關으로 活用한다는 规定같은 것을 適用함으로써 法으로서 圖書館이 國民教育에直接的으로 連繫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圖書館이 國民教育과 直結되는 까닭에 獨逸聯邦에서는 國家豫算에서 圖書館費가 大學運營費와 비슷하다는 實質的인 理由를 찾아 볼 수 있다. 확실히 圖書館은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리 많지도 않은 人員과 최소한도의 圖書購入費만은 支給되어야 할 것이다.

現實的으로 韓國出版界 最大的 苦悶이 良書의 販路가 좁은데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圖書館이 그 數에 있어서도 보잘

것 없는데다가 그나마 外形만은 圖書館으로 차려놓고豫算關係로 良書를 購入하지 못하는데 있다. 外國에서의 경우와 같이 良書라면 우선 圖書館에서率先 藏書로 購入하는 것은 물론, 이를 良書로서 널리一般大眾에게까지 推薦하는 것을 볼 때, 出版界는 또한 圖書館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圖書館法은 世界에서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數的 貧困에서 增大를 指向하는 한편, 政府나 地方團體의

적극적인 補助로서 地域社會의 文化센터요, 國民讀書運動의 프로펠러의 구실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作用이 出版界에 자극되어 良書出版에 拍車를 加賀으로써 文化開發에 寄與할 수 있기를 바라는 同時에 圖書館界와 出版界가一致해서 그 施行을 苦待하는 圖書館法이 早速制定되어 늦기는 하였지만 文化施策의 으로 보다 많은 實効를 거두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筆者·大韓出版文化協會長)

## 「韓國의 圖書館」發行!

1963年 3月 31日 現在  
全國圖書館의 實態調查

菊倍版 半洋裝 36面 玩 100원

例年 「韓國圖書館統計」를 프린트版으로 印刷하여 오던 것을 1963年을 맞이 하여서는 從來 實態調查書의 樣式을 變更하여 좀더 分析할 수 있는 資料를 著集하여 印刷版으로 出刊하였습니다.

단체회원 및 차료를 보내주신 圖書館에게는 一冊을 寄贈하고 있읍니다.